

범죄자 프로파일링: 과학인가 과장인가?

남 궁 현* · 심 희 섭**

국 | 문 | 요 | 약

경찰수사에 있어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우리나라의 학자와 실무가 모두에게 익숙한 분야로 자리 잡았다. 수사기관에서 프로파일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다양한 대중매체에서도 프로파일러의 활약을 긍정적으로 소개하면서 일반 시민들 역시 프로파일링을 효과적인 범죄 수사기법으로 인식하는데 이르렀다. 본 연구는 과연 프로파일링 기법이 이와 같은 수준의 신뢰를 획득할 정도로 실증연구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세부적으로 국내외 문헌 분석을 통해 프로파일링의 기본 가정을 포함한 제도 전반을 소개하고, 그 효과성 측면에서 심층적이고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등 다수의 관련 논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프로파일링이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가정(전제)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지지하는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 한다면, 이 기법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준의 관심과 선호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덧붙여, 현행 프로파일링 제도의 과학적 접근방법을 위한 몇 가지 제안들 역시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 주제어: 프로파일링, 프로파일러, 범죄 심리, 수사기법, 범죄분석, 강력범죄

* 메트로폴리탄 덴버 주립대학(Metropolitan State University of Denver) 범죄학과 조교수, 제1저자

** 국립경찰대학(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연구지원실 연구원, 교신저자

I. 서론

범죄자 프로파일링¹⁾은 수사관이나 범죄학자 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일상용어가 되었다. 미디어에 비쳐진 프로파일러는 범죄 현장에 남겨진 자취 등 사소한 행태적 증거 분석을 통해 범죄자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과 같은 개인적인 출신이나 배경을 추정함으로써 예상 범죄자를 성공적으로 특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사건을 극적으로 해결하는 사례들은 여전히 많은 영화와 소설, TV 드라마의 소재가 되고 있다. 이 같은 프로파일러의 “활약”에 대한 대중과 미디어의 관심은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간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프로파일링 기법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혹은 기대와 현실과의 간극이 크지 않은지 등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하는 비판적 접근은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영미권 국가에서 긍정적으로 소개된 학술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수사절차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기법을 지지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국내외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프로파일링의 효과성에 대한 맹목적 수준의 믿음을 바탕으로 그 자체를 과학적이라고 지지하거나 수사기관의 적극적 활용을 주장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프로파일링이 실제 범죄수사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혹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처럼 특정 부류의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를 먼저 살펴 볼 일이다.

본 연구는 현행 프로파일링 제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이고 비판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한다. 우선 프로파일링 제도의 등장 배경과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 프로파일링과 관련한 논점 및 시사점,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간 학계에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많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

1) 영미국가에서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criminal profiling, offender profiling, psychological profiling, investigative psychology, personality profiling, criminal investigative analysis 등 다양한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다(Canter, 2000; Copson, 1995; Douglas et al., 1986; Egger, 1999; Pinizzotto & Finkel, 1990; Snook et al., 2008; Winerman, 2004). 우리 경찰청에서는 범죄분석관 제도를 시행하면서 “범죄분석관”을 공식 명칭화한 것으로 보이나, 실무적으로는 프로파일러라는 명칭 역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줄여 “프로파일링”으로 칭한다.

구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조명함으로써 관련 학자와 실무가들에게 균형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프로파일링의 개요

1. 프로파일링의 정의

프로파일링은 범죄사건 해결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수사기법이지만, 그 자체로 범죄 수사의 다양한 측면이 집약되어 있다.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의는 그간 많은 실무가와 학자들이 다양하게 제시한 바가 있는데, 범죄의 현장에 남겨진 증거, 피해자, 증인 등을 통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Copson, 1995; Douglas et al., 1986; Holmes, 1989; Winerman, 2004; Woodworth & Porter, 1999).²⁾ 특정 범죄자 혹은 용의자를 정확히 지목하기보다는,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잠재 범죄자 집단의 공통적인 성격이나 배경 등에 대한 정보를 추정함으로써 수사 대상이 될 용의자의 범위를 좁히는 수사기법인 것이다(Hazelwood & Douglas, 1980; Muller, 2000). 즉, 범행의 특징을 통해 범인의 특징을 추론해 내는 것이 프로파일링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다(Copson, 1995).

범죄 피해자와 증인을 조사하고 범죄 현장에 남겨진 유전적, 생물학적 정보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전과자 정보 등과 비교하는 등 용의자 특징을 통해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기존의 수사라고 한다면, 프로파일링은 범죄 현장에 남겨진 범죄 전, 범행 진행 중, 범죄 후의 행태 분석을 통해 범인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예컨대 성별, 나이, 교육 정도, 직업, 종교, 결혼 여부, 전과 유무

2) 이후 범인과 지리적 특성(공간) 간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지리적 프로파일링(geographic profiling)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이 등장하는 등(김지영 & 정선희, 2011; 임준태 & 이도선, 2009; 최규범, 2006; Egger, 1999), 프로파일링이라는 용어는 여러 수사기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Snook et al., 2008b).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고, 가장 잘 알려진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영역에 집중하고자 한다.

등)을 점진적이고도 심층적으로 추론하는 하나의 수사실무 영역이다. 달리 말하면 범죄 현장에 남겨진 직접적 증거가 많지 않은 경우, 범인의 행태로 인한 자취를 통해 범인의 특성을 찾아냄으로써 용의자군을 축소하거나 범죄수사의 방향을 특정하는 기법인 셈이다. 예컨대, 지문이나 DNA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살인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사체 처리(신체 훼손, 가학적 고문, 사체의 위치 설정 등)나 의도적 메시지 전달(벽이나 거울에 피해자의 혈액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남기는 행위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범인의 성격이나 배경을 추론하는 것이 프로파일링 기법의 일례이다.

프로파일링은 그간 강도,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 수사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범죄의 수법이 극히 잔인하거나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연쇄 강간, 연쇄 살인 등)에 이 수사기법이 자주 적용되어 왔다(Bartol & Bartol, 2013; Holmes, 1989). 다른 범죄에도 프로파일링이 사용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으나, 지역사회의 공포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하면서도 범죄현장에 남겨진 물리적, 생물학적 증거가 많지 않은 일부 강력범죄에 주로 사용되어 온 것은 프로파일링을 도입한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덧붙여 프로파일링 기법을 사용하여 범인의 신상을 파악하여 수사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프로파일러라고 칭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파일러는 심리학자나 병리학자 등 인간의 행동이나 심리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수사기관에서 일하거나 혹은 수사기관의 자문을 의뢰 받은 외부 전문가를 통칭한다(Copson, 1995).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찰청에서는 범죄분석관 제도를 도입하여 분석관을 채용, 훈련 후 수사현장에서 프로파일링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언론 매체에서는 프로파일러로 칭해지고 있다.

2. 프로파일링의 등장 배경 및 발전 과정

아써 코난 도일(Arthur Conan Doyle)이 셜록 홈즈(Sherlock Holmes)라는 가공의 인물을 통해 범죄 현장의 단서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범인을 추론해 가는, 이른바 연역법적 방법(deduction)을 대중에게 소개한지 100여년이 지났다. 지금까지도 많

은 시민들과 일부 수사관들에게 설록 흠즈는 범죄 수사의 대부로 각인되어 있으며, 범행 현장에 남겨진 범인의 행태 자취를 통해 범인을 특정해 나가는 프로파일링에 대해서는 매력적이고 과학적인 기법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프로파일링의 기원을 15세기 가톨릭 교회가 마녀를 색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문헌이라고 보는 이도 있는데(Woodworth & Porter, 1999),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을 개인의 체형이나 골격, 성격과 심리 등에서 찾는 노력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³⁾ 특히, 강력범죄 현장에 남겨진 생물학적 증거(타액, 모발 등)가 많지 않아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을 경우, 여러 가지 행태적 자취로부터 범인을 추론해 나가는 과정은 수사관에게도 매력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프로파일링이 수사기관 및 대중의 관심을 본격적으로 끌게 된 것은 1972년 미 연방 수사국(FBI) 산하에 행태과학부서(Behavioral Science Unit)가 설립되고, 이 부서의 초창기 구성원 중 몇몇이 출간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시기와 일치한다(Cook & Hinman, 1999). 1960년대에 증가 추세에 있던 연쇄 살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 미국 경찰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범인을 검거하려고 노력했는데, FBI가 연쇄 살인범을 특정하기 위해 새로이 도입한 수사기법 중 하나가 바로 프로파일링이었다(Woodworth & Porter, 1999). 주지할 것은, 프로파일링이 대중에게 널리 인식되고 그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이유는 FBI가 적절하게 미디어를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프로파일링 등장 초기 미디어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Snook et al., 2008).

전통적으로 미국의 범죄 문제는 주로 지역 경찰의 책임으로 여겨졌는데, 20세기 이후에는 연방 기구인 FBI가 지역의 범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FBI 주도의 행태과학부서 설립도 연방정부가 지역 치안 관련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였다는 점 역시 명심할 필요가 있다(Bumgarner, 2007). 달리 말해, 프로파일링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관심은 그 효용성에 대한 일방적 신뢰와 함께 일부 정치적인 목적에서도 기인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근래에는 실증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접근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는 수

3) 프로파일링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른 연구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예컨대, 권창국, 2002; 김지영 외, 2009; 허경미, 2008; Egger, 1999; Woodworth & Porter, 1999).

사 심리학의 일부로서 범죄 현장에서 수사관의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 통계나 실증 연구를 기반으로 범죄자를 추론한다는 점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간주된다(Winerman, 2004a).

우리나라에서도 프로파일링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2004년 경찰청에 “범죄분석팀”을 설치함으로써 프로파일링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경찰청에 3명, 경찰청 산하 각 지방경찰청에 1명 내지 2명씩 투입되어 범죄분석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10년 남짓한 동안의 범죄분석팀 운용과 관련, 그 채용기준 및 훈련, 일선에서의 활용도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김지영 외, 2009; 허경미, 2008; 허경미, 2015). 외국에서는 전직 수사관이나 심리학 전공자 등을 수사기관이 프로파일러로 위촉하여 수사과정에 참여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실제 수사에 참여하는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러는 경찰청에 소속된 담당 경찰관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무적 관심과 더불어 프로파일링에 대한 학계의 관심 역시 지속되어 왔다.⁴⁾

3. 프로파일링의 접근법

프로파일링은 몇 가지 가정(혹은 전제)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Holmes, 1989). 첫째, 범죄자의 성격(personality)은 범죄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의 행동은 그의 성격 혹은 심리를 반영할 것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특히 범죄자의 경우 범행이나 일상 생활 중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수준의 성격이 행동으로 표출된다고 전제한다(cross-situational consistency). 예컨대, 소심한 성격의 범인은 일상의 생활에서도 소심한 행동을 하고, 범행을 저지를 때도 그 소심한 성격이 그대로 범행에 표출된다는 가정이다.

둘째, 위와 비슷한 맥락에서 범죄자의 성격 혹은 특성은 시간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다(temporal stability). 범죄자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그 성격이

4)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사이트에 등록된 논문에 따르면, 프로파일링 관련 학술논문(등재지와 후보지 포함)은 2011년 4건, 2012년 6건, 2013년 1건, 2014년 3건, 2015년 (6월 현재) 3건으로 학문적 관심도 줄지 않고 있다(한국학술지인용색인, 2015).

나 행동을 좀처럼 바꾸지 못하는데, 이에 따라 시점이 상이한 범죄 현장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초기의 프로파일러들이 범인의 범행 수법(method of operation 혹은 *modus operandi*, 흔히 MO라 불린다)이나 범행 현장에 남겨진 특정 징표(signature)에 많은 관심을 두었는데, 범인은 비슷한 수법이나 징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는 비슷한 개인 배경을 갖을 것이라는, 이른바 상호유사관계(homology)의 전제이다. 예컨대, 비슷한 방식을 사용해서 살인하거나 강간한 자는 그 사회 인구학적 배경이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프로파일링이 범죄 현장에 남겨진 행태의 자취를 통해 범죄자의 세부적인 특징을 연역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방식임을 상기한다면 이 같은 유사관계의 가정은 프로파일링의 중추와도 같은 논리라고 할 수 있다.

프로파일링 연구자들은 위와 같은 전제 하에 범죄자와 그가 남긴 범죄 현장의 증거 분석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류법(classification 혹은 *typology*)을 구체화시켜 왔다. 일례로, FBI에서 범죄 현장을 정돈형(organized)과 혼란형(disorganized)으로 이분화한 것은 잘 알려진 분류법이다(박지선, 2010; Holmes, 1989; Snook et al., 2008). 검거된 살인범을 면접하여 작성한 이 분류법은 서로 다른 개인적 특성을 가진 범죄자들은 범행 현장에서 상이한 행동 유형을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되었다. 이 분류법에 따르면 범행 현장에 남겨진 각각의 자취들이 정돈형 혹은 혼란형이냐에 따라 용의자의 특성을 점진적으로 추론해 나감으로써 마침내 용의자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유형 분류 이외에도 범인의 유형을 비사회적(nonsocial) 혹은 무사회적(asocial) 범인으로 분류하거나, 연쇄살인범을 임무형 살인범, 환상형 살인범, 쾌락적 살인범, 권력-통제형 살인범 등으로 분류한 시도(Holmes & Holmes, 2002) 역시 특정 범인은 특정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연쇄 살인범이나 연쇄 강간범의 경우, 범행 현장과 피해자 등이 여럿이기 때문에 각 범행현장들에 남아 있는 자취(증거, 피해자 등)의 공통점을 분석함으로써 용의자군을 좁혀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지할 것은, 범죄 현장에서 독특한 특징을 발견할 수 없다면 프로파일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Hazelwood & Douglas, 1980). 즉, 살인, 강간 등과 같은 강력범죄라고 하더라도 범죄 현장에 남겨진 범행의 흔적이 거의 없다면 프로파일러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로파일링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이 제한적이라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로파일링이 근거로 하고 있는 위와 같은 가정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프로파일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4.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링 연구

전술한 바와 같이 프로파일링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인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근간에 프로파일링에 관한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이할 만한 것은 대개의 연구가 외국의 프로파일링 제도를 호의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주이고, 비판적 검토는 간략하게 병행되거나 포함하지 않는 연구도 적지 않다. 즉 대부분의 지면을 프로파일링에 대한 우호적 혹은 긍정적인 연구에 대한 검토에 할애하는 등 원천적으로 프로파일링의 효과성을 지지하는 관점에서 다수 연구들이 출발했다는 점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예컨대, 김지영 외 2009; 박지선·최낙범, 2010; 허경미, 2015).⁵⁾

<표 1>은 우리나라의 자료를 근거로 한 최근의 프로파일링 관련 연구 목록을 보여주고 있다. 소개된 연구들은 우리나라에서 실행된 프로파일링 연구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대중과 수사기관, 그리고 학계의 관심에 비해 프로파일링의 신뢰성이나 타당성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많지 않은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국내 연구 중 프로파일링에 대한 비판적 측면에서 연구한 논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예컨대, 광대경, 2004),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프로파일링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기 위해 그 비판적 관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프로파일링 관련 실증적 연구 사례

연구	연구목적	연구대상	연구결과
조윤오 (2015)	성범죄자의 피해자 선택 특징 분석	성범죄자 144명 (기결수)	성범죄자의 일상 행동 관련 기술적 통계 제공
신상화·김지호 (2014)	성범죄자 군집에 따른 범죄 행동 및 특성 분석	성범죄자 160명	범죄 현장의 차별적 행동특성에 따른 군집 분류
서중한 외 (2012)	글을 통한 범죄자와 일반인의 심리적, 언어적 특성 차이 분석	살인범 61명(기결수), 대학생 159명	살인범 집단에서 일부 언어적, 심리적 특징 발견
김지영 외 (2009)	연쇄성폭력범죄자의 특성 및 유형 분류	성폭력범죄자 54명 (수형자)	연쇄성폭력범죄자의 범행특성, 사회적 심리적 특성 유형화
박지선·최낙범 (2010)	대인 강도 범죄자의 유형 및 특성 분류	대인 강도 범죄 79건 (경기경찰청 관내)	대인 강도 범죄자를 기회형과 계획형으로 분류하고 범행 특성을 유형화
임준태 (2009)	연쇄방화범의 특징(프로파일) 추출 및 범행을 위한 이동 특성 분석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방화범의 범행 전, 범행 중, 범행 후 행동 특성 기술
이수정 외 (2006)	살인범의 특징적 성격 분석	살인범 110명 (기결수)	살인범에게 특징적인 성격 (기만적, 반사회적, 우울성, 내향적)이 있으나, 그 성격을 통해 재범을 예측하지는 못함

또한, 위 <표 1>에 포함된 연구는 대부분 동종 범죄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예컨대, 직업, 학력, 결혼 유무 등의 자료들)을 유형화하여 분석하는 것이 주였다. 프로파일링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범죄 현장에서의 행동 특성을 분석하는 것임을 상기한다면, 상당수의 연구는 그러한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프로파일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프로파일링이 전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정 자체에 대한 분석은 발견하기 어렵다는 현실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김지영과 동료들(2009)의 연구에서는 연쇄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지표들에서는 가해자간 다양성이 높았지만 범행 이후 가해자의 행태와 관련해서는 가해자간 다양성이 낮았는데,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는 범죄에 프로파일링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실증연구를 통해 검토되지 못한다면 프로파일링 기법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담보 받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부족한 실증연구 기반이

프로파일링이 기존 수사기관에서 활용하던 범죄 분석 기법과 본질적으로는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검찰청, 2014).

최근 범죄 현장의 행동 특성과 범인의 성격 등 개인 특성간의 관련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일부 등장하고 있는데(예컨대, 김지영 외, 2009; 박지선&최낙범, 2010; 신상화 & 김지호, 2014), 이와 비슷한 연구가 다양한 표본을 통해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향후 유사한 결과가 제시되는 수준에 이른다면 프로파일링의 가정에 대한 신뢰성과 유효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다만, 이 같은 실증연구에서도 특정 행동 변인들이 왜 해당 연구의 범주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달리 말하면 변인들이 연구에 포함된 구체적 이유 및 그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의 부족 역시 프로파일링의 주된 비판 중의 하나인데, 그간의 우리나라의 실증 연구도 예외는 아니며 향후 연구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최성재, 2007).

Ⅲ. 프로파일링 관련 논점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프로파일링은 일부 범죄학자와 수사관, 대중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 왔으나 몇 가지 논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층적인 논의가 요청된다. 우선 과연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기존의 수사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많이 주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로파일링 기법을 지지하는 학자나 실무자들의 주장과 같이 과연 실제 수사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도움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나 학문적 논의는 많지 않았다. 대개의 연구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이미 강력범죄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수사 실무자나 감독자의 이해 부족 등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 장에서는 프로파일링 기법과 관련한 몇 가지 논점들을 소개 및 검토하고자 한다.

1. 프로파일링 가정(전제)

위에서 살핀 바대로,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성격적 특성과 범죄 현장에서의 행동 간에 직접적이고 일관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가정 혹은 전제에 그 근간을 두는 접근법이다. 동일한 범죄자는 그의 사회적 혹은 심리적 배경으로 인해 유사 혹은 동일한 상황(범죄 현장)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행동(범행)을 취하는 등 특정 패턴의 행태 자취가 현장에 남는 반면, 개인적 특성이 다른 범죄자 간에는 동일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다른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범죄 현장에서 중대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Canter, 2000). 이러한 접근법은 범죄 현장을 정확히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기만 하다면 범죄자의 유형을 유추할 수 있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곽대경, 2004; Egger, 1999).

그러나 범인의 유형과 범행의 특성 사이에 예측 가능한 관련성이 있다는 위와 같은 가정에 대해 지금까지의 심리학적 연구결과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Snook et al., 2008a). 일부 연구에서는 강간범의 특정 행위(예컨대, 범행을 위한 주거침입이나 강간 전 폭행 등)와 전과 기록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혔지만(Davies et al., 1997), 이 같은 연구결과는 일부에 국한되고 다수의 연구는 범인의 행태에 관한 공간적, 시간적 일관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Snook et al., 2008b). 예컨대, 영국에서 비면식범에 의한 100건의 강간 사건을 분석한 연구(Mokros et al., 2002)의 경우에 강간 현장에서의 행태와 범인의 개인 배경 간에 어떤 상관관계도 찾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연쇄 성폭력 범죄자의 연구에서도 범행 당시 연령이나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직업, 학력 등에서 범인 간에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김지영 외, 2009). 달리 말하면, 비슷한 수법으로 강간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그 강간범이 비슷한 사회 인구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20대 중반의 미혼인 일용직 노동자 남성도 50대 중반의 기혼 전문직 종사자와 비슷한 방법(피해자 및 강간수법의 선택 등)으로 강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그 한 예이다.

상황에 따라 범죄자의 행동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부족한 편이다(Bartol & Bartol, 2013).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도 범죄자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보일 것이라는 프로파일링의 전제가 증명되기만 한다면 프로파일링이 연쇄 강간이나 연쇄 살인 같은 강력범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클 것이다. 그러나 살인범이나 강간범들은 범죄 현장에서 일관된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저항 등 다양한 상황의 변화 혹은 범죄자의 개인별 범죄 행동 숙련도에 따라 상황별로 다른 행동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rris et al., 2009). 이러한 피해자의 저항 정도에 따른 동일 범인의 대응 행동 변화, 범죄자의 성숙이나 경험, 학습 등을 통한 범행 수법의 진화 혹은 발전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범죄자별 범행의 일관성이라는 가정 역시 수정 혹은 보완할 필요도 제기된다(Sorochinski & Salfati, 2010). 달리 말하면, 여러 가지 상황적 요소로 인해 프로파일링이 근거로 하는 가정들 중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 전술한 프로파일링의 가정들은 모두 범인이 한 명일 것이라는 또 다른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범인이 개입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범행 현장에 남겨진 행태의 흔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약술하면, 프로파일링이 근거로 하고 있는 가정(혹은 전제)이 증명되지 않거나 그 가정이 그릇된 것으로 증명될 경우, 그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후의 모든 주장이나 활용방안 등은 설자리를 잃게 되는 것인데 정작 그러한 가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해 보인다.

2. 연구 대상

일반적으로 과학적 연구는 다양한 표본 내에서 유형을 분석하고 그 질서를 찾아냄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장래의 사건을 예측함으로써 실무에 기여할 수 있다. 프로파일링의 경우에도 다양한 강력범죄 현장에서 모아진 자료를 축적하여 그 안에 존재하는 유형을 확인, 향후 범죄자나 용의자의 개인 특징을 기술하거나 수사선상의 용의자 범위를 축소하여 수사에 기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과학적 기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Winerman, 2004).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파일링 연구가 근거하고 있는 강력범죄의 숫자는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하여 그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예컨

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프로파일링을 널리 알린 계기는 FBI에 의해 초기 분석된 30여건의 강간살인 사건에 근거한 것이었고,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링에 대한 실증 연구도 대부분 100여건 내외의 사례를 근거로 수행되어 왔다. 이런 현상은 비단 미국과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그로 인해 파생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논란은 프로파일링의 주된 비판 중 하나로 여전히 남아 있다(Jackson et al., 1997).

물론 현장에서 묵과될 수 있고 실제로 간과되었던 사소한 증거를 통해 범죄자의 행동 특징을 추론하고, 이를 통해 범인을 특정하거나 용의자를 축소함으로써 수사의 물꼬를 트거나 획기적인 계기를 제공한 경우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한 해 동안 처리하는 전체 강력범죄의 숫자를 고려한다면 프로파일링의 도움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는 우연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프로파일링 기법이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쇄 살인, 연쇄 강간 사건 등의 경우 그 발생 빈도가 극히 낮아 심리학자나 범죄학자들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Dietz, 1986).

우리나라의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의 경우에도 80% 이상의 사건이 이른바 면식범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데(대검찰청, 2014),⁶⁾ 이러한 현황을 감안한다면 프로파일러의 도움이 없어도 수많은 중대 범죄들의 용의자군이 예상과는 달리 쉽게 특정될 수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프로파일링 기법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자주 거론되는 연쇄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이후 증가하기는 했으나 지금까지 누적된 통계수치에 따르면 1년에 한건 미만의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김지영 외, 2009). 즉, 이처럼 적은 수의 사건을 통해 연쇄 살인범의 행태를 분석하는 것이 사례 연구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될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프로파일링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과 같은 범죄는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낮은데,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로 프로파일링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범죄 행태 및 유형 분석을 통한 수사 보조

6) 2013년에 발생한 강력범죄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미상”인 경우는 살인 15.2%, 강도 16.5%, 방화 0.8%, 강간 19%로 나타났다(대검찰청, 2014).

활동이라고 평가받기 보다는 오히려 프로파일러의 개인적 경험이나 직관이 그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Alison et al., 2004). 무엇보다 프로파일링 기법의 사용으로 해결된 사건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이 접근법이 범죄의 해결에 기여하는 바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특히 최근의 지문, 혈액, DNA 분석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수사기관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갈수록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프로파일링 기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는 사건이 많지 않다는 점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Bartol & Bartol, 2013).

3. 프로파일러의 역할

프로파일러들은 수년간의 수사 경험, 행태 과학에 대한 이해, 혹은 범행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범죄나 범죄자에 관한 탁월한 지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범행과 범인의 성격, 배경 등에 대해 일반 수사관이나 대중에 비해 월등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프로파일러가 용의자의 배경을 특정하는데 있어 비프로파일러 보다 뛰어난 능력을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Snook et al., 2008a; Snook et al., 2008b).⁷⁾

실제로 범죄 수사관도 범행을 분석하는데 있어 프로파일러가 사용하는 추론 기법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right, 2013). 즉 노련한 수사관이 경험, 직관, 그리고 합리적 추론에 근거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프로파일러의 방식과 질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사관이나 지휘관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에 대한 인식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연구가 있으나(김지영 외, 2009), 이 같은 현실은 프로파일러의 모호한 지위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7) 프로파일러와 다른 수사관, 일반인들의 프로파일링 능력을 비교하기 위해 이미 해결된 사건의 범죄자를 프로파일 하도록 설계한 일부 연구가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살인 사건의 경우는 프로파일러의 범죄자 묘사가 비프로파일러 보다 정확했으나, 강간 사건의 경우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프로파일러가 비프로파일러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하였으나, 프로파일러들 사이에서는 정확도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과학 전공 대학생이 프로파일러 다음으로 정확도를 보였는데, 논리력이 프로파일링의 중요한 기술이라고 결론내리기도 했다(Winerman, 2004).

수도 있을 것이다. 수사관 중 프로파일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Gekoski & Gray, 2011), 프로파일러가 기존의 수사 방식과 크게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건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그 이유라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혹시 수요가 있을지라도) 프로파일러가 소수의 범죄와 범죄자를 분석한 결과를 선불리 대중과 공유하며 범죄 예방 대책이나 사회적 대응을 논하는 것은 많은 주의를 요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파일링이 영미 국가에서 사용하는 기법과 동일한 것을 뜻한다면, 프로파일러의 정책 제언이나 범죄 문제에 대한 일반화가 그들의 역할 내에 속하는 것인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프로파일러로서 특정 사건에서 특정 범인의 성격 등을 추론하는 제한된 역할에서 벗어나, 소수 사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수의 범죄에 대해 일반화된 결론 및 대응책을 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미디어에서도 프로파일링의 역할에 대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프로파일러도 자신의 역할 범위에 대한 충분하고도 명확한 진단을 통해 시민에게 정보전달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프로파일링의 효과성

프로파일링 기법의 적용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이 기법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영미권 국가에서도 그 효과성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적지 않다는 점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⁸⁾ 물론, 프로파일러의 역할을 피해자에 대한 조사 활동 지원, 범인 검거 후 진술 참여 등으로 넓게 해석한다면 수사 과정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파일링의 성과나 효과를 논할 수 있겠다. 그러나 프로파일링 본래의 목적에만 국한한다면 프로파일링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8) 미국 프로파일러의 “활약”에 대한 유명한 일화는 대부분 1990년대 이전의 것들이 많은데(Egger, 1999), 이 당시는 지문이나 DNA 정보 등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한 수사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던 때이기도 하다.

첫째, 범죄 현장의 증거나 다른 자료를 근거로 한 프로파일러의 범인 특성이나 성격에 대한 예측이 일반인이나 수사관의 예측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없다(Snook et al., 2008a). 상술한 바와 같이, 지난 과거의 행동을 분류법을 사용하여 예측하는 기법은 현재까지 과학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 법 심리학자들과나 정신의학자들이 프로파일링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Torres et al., 2006).⁹⁾ 영미의 법원에서도 프로파일러의 법정 증언에 큰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프로파일링이 과학적 확신을 줄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다(권창국, 2002; Alison et al., 2004; Bumgarner, 2007; Woodworth & Porter, 1999).

둘째, 소수의 일화적 사례(anecdotal evidence)에만 관심을 집중하여 그 효과성이나 유용성을 과장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세기 중반 미국의 연쇄 폭파범(이른바, Mad Bomber)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심리학자 제임스 브러셀(James Brussel)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제임스 브러셀은 당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던 수사관들에게 용의자의 개인적 특징을 정확히 집어내고, 수사관이 용의자를 검거할 경우 정장을 입고 있을 것이라는 점까지 “예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례는 프로파일링을 소개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에서도 등장하고 있으나, 그가 당시 제시했던 폭파범의 프로파일은 이미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에서도 제기되었었다는 점이나, 폭파범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제보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이었던 점 등은 잘 거론되지 않고 있다(Gladwell, 2007; Snook et al., 2008a).

또한 프로파일러가 예측한 범인의 특성(혹은 프로파일)이 실제 검거된 범인과 큰 차이를 보였던 사건들도 적지 않다(Kocsis, 2007). 따라서 프로파일링의 지지자들이 일부 성공사례에만 집중해서 프로파일링의 효과성을 홍보하거나 당연히 한다면 실재를 과장 혹은 왜곡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Snook et al., 2008). 미국의 몇몇

9)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법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프로파일링”에 대한 견해 보다 “범죄수사분석(criminal investigative analysis)”에 대한 견해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Torres et al., 2006). 이 설문조사는 동일한 기법에 대해 다른 용어만을 사용하였던 것인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거부감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프로파일러들은 FBI 산하 행동과학연구소의 프로파일링 기법이 80%의 높은 적중률 혹은 정확도를 보여준다고 주장한 적이 있으나(Ressler & Shachtman, 1992),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자료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Muller, 2000).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부 연쇄살인범 검거에 프로파일러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 있으나 실제로는 일선 수사관의 활동으로 인해 해결되었던 경우가 있었는데(김지영 외, 2009), 프로파일링이 대중에게 매력적인 이미지를 불어일키면서 그 역할이 과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셋째, 프로파일링이 단지 용의자 검거 후 그의 심리 상태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여러 가지 사회 인구학적 동기와 관련시키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기여할 바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미 발생한 사건과 검거한 용의자의 배경을 연결시키는 것은 그 난이도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구나 사건의 원인과 관련한 타당해 보이는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 따라서 해결된 사건(혹은 검거된 범인)을 제한적인 사회 인구학적 변수들로 분석하여 범죄의 원인이나 범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프로파일링 기법, 혹은 프로파일러만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많은 표본 연구를 통해 그 분석 결과가 거듭된 재실험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가공의 인물 설록 홈즈나 “양들의 침묵(Silence of the Lamb)”에 등장하는 FBI 수사관에게는 범죄자의 행태나 행태의 결과물이 범행과 연결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단서가 되나, 현실은 그다지 단순하지 않다.¹⁰⁾ 프로파일링 기법이 수사과정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 반세기 가까이 되고 있으나, 그간 프로파일링의 역할과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고 현재까지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는 것은 프로파일링 기법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Copson, 1995).

10) 아서 코난 도일이 가공의 인물 설록 홈즈를 만들어 소설 속에서 각종 범죄를 척결하던 19세기 말의 런던은 잭 더 리퍼(Jack the Ripper)가 연쇄 살인을 저지르며 악명을 떨치던 시기였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5. 프로파일링에 대한 관심

이처럼 프로파일링을 뒷받침할 만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함에도 대중의 호의적 관심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프로파일링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표하는 연구가 많음에도 이 같은 비판적 견해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가장 큰 이유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대중문화의 지지를 들 수 있다(Lilienfeld et al., 2010). 간략히 상술한 바와 같이, FBI는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프로파일링이 범죄 척결의 유용한 수단이라는 이미지를 미디어를 통해 전파했다. 이후 각종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자칭 프로파일러들이 출간한 몇몇 책들이 대중의 관심을 끌면서 프로파일링은 강력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새로운 기법인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프로파일링에 대한 호의적인 집중 조명으로 인해 표면적으로 피해를 보는 집단이 없어 보인다는 점 역시 이러한 현상을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과대평가도 프로파일링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이다(Lilienfeld et al., 2010). 대개의 프로파일러는 범죄 발생 후 혹은 용의자 검거 후 범행 동기나 방법 등에 대해 논리적인 진단을 내리곤 하는데, 대중이 그들의 설명에 관심을 갖고 수궁하는 것은 소위 “전문가”라는 지위 자체 때문일 수도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프로파일러의 잠재적 범인에 대한 묘사가 다소 포괄적이고 당위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중은 그들의 특별한 지위로 인해 신뢰를 부여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인지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수의 성공사례는 다수의 실패사례보다 기억에 선명히, 그리고 오랫동안 남는다는 점이다(Kocsis & Palermo, 2007).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프로파일링이 대중과 수사관, 그리고 일부 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실제 사건에서 프로파일러가 제시한 범인의 특징과 검거된 범인의 배경이 일치했던 몇몇 성공사례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파일러가 범인의 특징을 틀리게 제시한 수많은 사례는 미디어에 등장하지 않거나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전술한 대로, 프로파일러의 도움이 실제 사건 해결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음에도,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

러들의 사후 회귀적 분석이 마치 공신력 있게 받아들여질 정도의 범죄자 예측 능력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IV. 프로파일링 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

1. 프로파일링에 대한 과학적 연구

프로파일링이 과학적인 수사 기법의 하나로서 평가받으며 일선 수사 현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범죄자의 행동 분석을 통한 분류가 일반화될 수 있을 정도로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권창국, 2002; 최규범, 2006). 영미의 경우에도 프로파일링 기법이 범죄자의 개인 배경을 추론하는데 효과적이지에 대한 연구 결과도 엇갈리고 있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프로파일링의 가정에 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한 현실이다. 현재까지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프로파일링이 프로파일러의 경험이나 직관력에만 의존하면서 요행을 바라는 얇은 기법이라고 온전히 평가절하 할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수사를 극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획기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파일링이 과학적 기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범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관리하고, 범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프로파일링의 가정에 대한 분석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권창국, 2002). 즉, 프로파일링이 제시하는 기법이나 주장들이 실험 가능하고(testable) 반증 가능하여야(falsifiable) 할 것이다(Popper, 1968). 이를 통해 프로파일링이 근거로 하고 있는 몇몇 가정들이 실증적 실험과 관찰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다. 가설을 설정하고 관찰과 재관찰, 실험과 재실험의 과정을 반복하는 등 엄격한 실증적 분석을 거친 결과를 바탕으로 논리와 주장의 합리성을 따져야 하는 것이다.

둘째, 이같은 과학적 실험과 연구를 위해서는 프로파일러가 현장에서 수집한 자

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기준 혹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통상 프로파일러가 공헌할 수 있는 사건들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향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현장의 수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증거를 면밀히 기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곽대경, 2004; Alison et al., 2004; Bartol & Bartol, 2013). 결국 프로파일링은 수사과정에서 모아진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Cook & Hinman, 1999). 장기적으로는 경찰청 내부에 프로파일링 관련 실증연구를 전담하는 연구기관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윤리적, 법적으로 허용되는 선에서 학계의 전문가와 그간 축적된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수행한(혹은 수행할) 관련 정책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심층적으로 병행함과 동시에 지난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지속된 범죄분석관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이 향후 관련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 두 가지 선결조건을 바탕으로 향후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가능할 것이다. 이미 해결된 사건을 바탕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동일 범인이 범죄 현장이나 피해자에 따라 상이한 수법을 사용하는 이유나 동기 등을 조사하여 범인의 심리를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하고, 미결 사건의 경우 미결 사건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찾아내는 노력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Woodworth & Porter, 1999). 교정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개인적 배경뿐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도움이 될 것이다(이창한, 2006; 허정미, 2015). 이 경우에도 범인의 특성과 범행의 특성간의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내는데 관심을 기울인다면 프로파일링 기법의 유용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프로파일러와 비프로파일러가 범행 현장의 증거 분석 절차와 범인 추정 결과에 있어서 질적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실험 연구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해결된 사건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프로파일러와 비프로파일러(수사관, 범죄학 전공 학생, 일반인 등)의 예측을 비교해 보는 것도 프로파일링에 대한 한 가지 연구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Pinizzotto & Finkel, 1990; Snook et al., 2008b).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만약 프로파일링이 근거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정들이 엄격한 과학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프로파일링에 대한 학문적, 조직적 지원이나 관심이 적정한지 재검토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2. 프로파일링에 대한 냉정한 평가

마치 복잡한 퍼즐을 명쾌하게 푸는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듯이,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에 등장하는 프로파일러의 활약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선을 대신하여 악을 퇴치하는 영웅과 같은 모습에 희열을 느끼는 것도 당연할 수 있다. 또한 일반 대중이 프로파일링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는 것은 일부 미디어에서 비쳐지는 모습이 대단히 선명하고 기억하기 쉽다는 점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이나 일부 수사관이 프로파일링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정세종, 2014), 그것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법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당연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Kocsis & Palermo, 2007; Snook et al., 2008a).

프로파일러에 대한 다소 과장된 묘사를 통해 수사기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면, 프로파일링 기법 자체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많은 연구에서 프로파일링이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큰 효과가 없었음을 밝혔음에도 프로파일링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재생산 혹은 재활용 되는 것은 일반 대중들에게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경찰청에서는 범죄분석관이라는 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심리, 행태, 그리고 그 심리와 행태가 투영된 범죄 현장의 증거를 분석하려는 노력을 해 왔다(김지영 외, 2009; 허경미, 2015). 그러나 프로파일링 기법을 통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미제 사건이 해결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강력사건 현장에서 프로파일러들이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수사관, 수사 감독자 등의 관심 부족, 수사관간의 공조 부족 등이 프로파일링 발전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일부 지적이 있으나(김지영 외, 2009; 박지선&최낙범, 2012; 허경미, 2015), 그 이전에 프로파일링에 대한 진단과 비판적 분석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다른 수사기법(DNA, 혈흔, 지문 분석 등)이 신뢰성을 바탕으로 일선 수사현장에 도입된 후

“과학수사기법”으로 인정받고 자리 잡은 것에 비교하면, 범죄분석관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다른 수사기법들과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프로파일러가 범죄 해결에 기여하는 바가 정확히 입증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오히려 현장 수사관들이 강력 사건 현장에서 내리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프로파일러에 대한 연구와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수준의 발전적 방법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수사관의 결정을 직관이나 경험에만 의지한 “전통적 수사방법”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후 “황금 시간(golden hour)”에 현장에 임하는 일선 수사관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투자하는 편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Wright, 2013). 더 나아가 현장 수사관의 의사결정과 프로파일러의 분석 과정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도 프로파일링의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미국가의 경우에도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프로파일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프로파일링 기법에 대한 신뢰나 지지의 발로라기보다는 “모든 가능한 기법을 동원하기 위해서,” 혹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Snook et al., 2008). 일부 전직 프로파일러들조차 현재의 프로파일링은 “과학이라기보다는 기술(more art than science)”이라고 평가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Cook&Hinman, 1999; Kocsis, 2006). 따라서 프로파일러가 프로파일링 기법을 사용하여 범죄에 도움을 주거나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에도, 프로파일링 기법이 아직까지 실증적, 과학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Alison et al., 2004).

V. 결론

본 연구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프로파일링 기법이 지니고 있는 몇몇 논점과 실증적 연구 분석, 그리고 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범죄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더불어 범죄자를 어떻게 검거할 것인지에

대한 학자와 실무자의 관심은 그간 변함이 없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프로파일링에 대해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대중의 인식과는 달리, 일선 수사관과 범죄학자 및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프로파일링의 유용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세부 집단 간, 심지어 집단 내에서도 견해차가 있다.

프로파일링이 범죄 수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프로파일링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을 주장하는 옹호자들도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프로파일링의 일부 성공사례를 제외하고는 그 기법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요약하자면, 프로파일링이 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많은 기법 중 하나로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는 있을지라도, 범죄 해결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간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Holmes, 1989). 이는 애초 프로파일링이 범죄 현상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이론적 배경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실용적 접근 방법이었다는 배경과도 관련이 있겠다. 즉, 프로파일링은 범죄현장에 남겨진 범인 행태의 흔적을 통해 범인의 특성을 추론해 가는 과정으로서 미국 연방수사국의 수사 실무에서 시작된 기법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부 학자와 실무자의 긍정적 관심 이외에는 정작 프로파일링이 사건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많지 않은 편인데, 이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프로파일링이 근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정들에 대해 제기되는 타당성 및 신뢰성 문제, 그리고 소수의 사례에 근거한 단순한 분류법이 유용한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 대해서는 아직 명쾌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프로파일링은 과학인가, 과장인가? 아직까지의 국내외 실증 연구에 의하면 프로파일링을 과학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의 영향으로 프로파일러의 역할과 그들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많이 조명되고 있으나, 소수 성공 사례에만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대중의 긍정적 선호와 기대를 근거로 프로파일러의 역할을 선불리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원론적인 수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프로파일링의 유용성 내지 효과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조직적 투자를 시도하기 전에 프로파일링 기법이 진정으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수사

의 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냉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 축적을 통해 경학 협력연구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향후 프로파일링의 여러 가지 기본 가정들을 실제로 테스트하는 수준의 연구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객관성이 확보된 연구 결과들이 점진적으로 실무에 반영될 때, 비로소 비용 편익 관점에서의 정책 결정에 대한 정부와 시민의 잠재된 수요 역시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프로파일링을 개인의 직관이나 경험에만 의존하는 얇은 수사기법으로 폄하하고자 함이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프로파일러(특히 수사기관에 속하지 않은 프로파일러)는 수사관이 제시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현행 수사에 기여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다만 프로파일링이 각종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바와 같이 시민들에게 전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무비판적으로 묘사되는 것에는 학계나 실무 모두 경계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실증연구로서는 프로파일링의 역할이 아주 제한적임을 인지하고, 다른 과학수사기법과 같은 과학적인 접근방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다각도의 실험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철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프로파일러나 프로파일링의 대승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곽대경(2004), 경찰수사를 위한 범죄심리 연구의 활용방안, 『사회과학연구』 제10권 제2호.
- 권창국(2002), 범죄자 프로파일링 증거의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 김지영·박지선·박현호(2009), 연쇄성폭력범죄자 프로파일링과 프로파일링 제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영·정선희(2011), 한국연쇄성범죄의 지리적 프로파일링, 『한국공안행정학회』 제43호.
- 대검찰청(2014), 2014 범죄분석.
- 박지선(2010),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의 활용, 『경찰대학 논문집』 제30권, 경찰대학.
- 박지선·최낙범(2010), 범죄 행동을 통한 대인 강도 범죄자의 유형별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1호.
- 박지선·최낙범(2012),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인식과 발전 방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한국콘텐츠학회.
- 서종한·김경일·이창환·김근영(2012), 살인범의 글에 나타난 언어심리적 특성과 성격 프로파일링에 관한 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 제14권 제3호.
- 신상화·김지호(2014), 범죄 현장 행동 군집에 따른성범죄 프로파일링 도출을 위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4권 제1호. 경찰대학.
- 이수정·공은경·공정식(2006), MMPI에 근거한 국내 남자 살인범 성격프로파일링 및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25권 제1호.
- 이창한(2006), 범죄프로파일링에 있어 경찰과 교정기관의 협력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31권, 한국교정학회.
- 임준태(2009), 연쇄방화범 프로파일링과 이동특성, 『한국공안행정학회』 제37호.
- 조운오(2015), 성범죄자들의 피해자 선택 특징에 관한 프로파일링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7권 제1호.

- 최규범(2006), 연쇄범죄와 프로파일링 방법론 연구, 『경찰학연구』 제6권 제3호(통권 제12호), 경찰대학.
- 최성재(2007), 살인사건의 연관성 프로파일링 연구, 『경찰학연구』 제7권 제2호(통권 제14호), 경찰대학.
- 허경미(2007), 연쇄강간범의 프로파일링 과정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34호.
- 허경미(2008),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치안정책연구소.
- 허경미(2015), 범죄 프로파일링 제도의 쟁점 및 정책적 제언, 『경찰학논총』 제10권 제1호, 경찰학연구소.

[외국문헌]

- Alison, Laurence (2004), The academic and the practitioner: Pragmatists' views of offender profiling,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0:71-101.
- Bartol, C., & Bartol, A. (2013), *Criminal & Behavioral Profiling*, Sage, Los Angeles, California.
- Bumgarner, J. (2007), Criminal profiling and public policy, In Kocsis, R. (Ed.), *Criminal Profiling: International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Humana Press, Totowa, New Jersey.
- Canter, D. (2000), Offender profiling and criminal differentiation, *Journal of Criminal and Legal Psychology*, 5:23-46.
- Cook, Patrick E., & Hinman, Dayle L. (1999), Criminal Profiling: Science and Art,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15:230-241.
- Dabney, Dean A., Dugan, Laura, Topalli, Volkan, & Hollinger, Richard C. (2006), The impact of implicit stereotyping on offender profiling: Unexpected results from an observational study of shoplifting,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3:646-674.
- Dietz, P. (1986), Mass, serial and sensational homicides, *Bulletin of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62:477-491.
- Douglas, J., Ressler, R., Burgess, A., & Hartman, C. (1986), Criminal profiling

- from crime scene analysi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4:401-421.
- Egger, S. (1999), Psychological profiling: Past,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15:242-261.
- Gekoski, A., & Gray, J. (2011), It may be true but how's it helping? UK police detectives' views of the operational usefulness of offender profil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Management*, 13:103-116.
- Gladwell, Malcolm. (2007), *Dangerous Mind*, The New Yorker, 2007. 11. 12.
<http://www.newyorker.com/magazine/2007/11/12/dangerous-minds>.
- Harris, D., Smallbone, S., Dennison, S., & Knight, R. (2009), Specialization and versatility in sexual offenders referred for civil treatment,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7:33-37.
- Hazelwood, Robert R., & Douglas, John E. (1980), The lust murderer,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49:18-22.
- Holmes, R. (1989), *Profiling Violent Crimes: An Investigative Tool*, Sage Publications, Newbury Park, California.
- Holmes, R., & Holmes, S. (2002), *Profiling Violent Crimes: An Investigative Tool*, Sage Publications, Thousand Oaks, California.
- Jackson, J., Eshof, P., & Kleuver, E. (1997), A research approach to offender profiling, In Jackson, J. & Bekerian, D. (Eds.), *Offender Profil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John Wiley & Sons, West Sussex, England.
- Kocsis, R. (2007), *Criminal Profiling: International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Human Press, Totowa, New Jersey.
- Kocsis, R., & Palermo, G. (2007), Contemporary problems in criminal profiling, In Kocsis, R. (Ed.), *Criminal Profiling: International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Humana Press, Totowa, New Jersey.
- Mokros, Andreas, & Alison, Laurence J. (2002), Is offender profiling possible? Testing the predicted homology of crime scene actions and background

- characteristics in a sample of rapists,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7:25-43.
- Muller, D. (2000), Criminal profiling: Real science or just wishful thinking?, *Homicide Studies* 4:234-264.
- National Center for the Analysis of Violent Crime (1998), Criminal Investigative Analysis: Sexual Homicid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Quantico, Virginia.
- Pinizzottot, A., & Finkelt, N. (1990), Criminal personality profiling: An outcome and process study, *Law and Human Behavior* 14:215-233.
- Popper, K. (1968),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Hutchinson & Co, London.
- Ressler, R., & Shachtman, T. (1992), *Whoever Fights Monsters*, Pocket Books, New York.
- Snook, B, Cullen, R, Bennell, C, Taylor, P, & Gendreau, P. (2008a), The criminal profiling illusion: What's behind the smoke and mirro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5:1257-1276.
- Snook, B., Eastwood, J., Gendreau, P., Goggin, C., & Cullen, R. (2008b), Taking stock of criminal profiling: A narrative review and meta-analysi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4:437-453.
- Snook, B., Haines, A., Taylor, P., & Bennell, C. (2007), Criminal Profiling Belief and Use: A Study of Canadian Police Officer Opinion, *The Canadian Journal of Police & Security Services*, 5:1-11.
- Sorochinski, M., & Salfati, G. (2010), The consistency of inconsistency in serial homicide: Patterns of behavioral change across series,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7:109-136.
- Torres, A., Boccaccini, M., & Miller, H. (2006), Perceptions of the Validity and utility of criminal profiling among forensic psychologists and psychiatrist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7:51-58.
- Winerman, L. (2004a), Criminal profiling: The reality behind the myth, *APA's*

Monitor on Psychology, 35:66-69.

Winerman, L. (2004b), Does profiling really work?, *APA's Monitor on Psychology*, 35:67.

Woodworth, M., & Porter, S. (1999), Historical foundations and current applications of criminal profiling in violent crime investigations, *Expert Evidence* 7:241-264.

Wright, M. (2013), Homicide detectives' intuition,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10:182-199.

Criminal profiling: Science or pseudoscience?

Namgung Hyon* · Shim Heesub**

The application of criminal profiling to police investigations is not new to both scholars and practitioners in South Korea any more. Fervent media attention to anecdotal evidence supporting profilers' contribution to investigations might lead to citizens' positive perception of the effectiveness of criminal profiling. The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the investigative technique has been supported by empirical evidence. This study includes not only descriptions of various criminal profiling models and assumptions, but also critical discussions on its effectiveness by reviewing both Western and Korean literature. The literature review shows that only scant empirical evidence supports the effectiveness of criminal profiling in criminal investigations. It is also suggested that scholars as well as practitioners should be aware of the limitations of criminal profiling, specifically in terms of its assumptions. Thus, both researchers and crime investigators need to take a cautious approach toward the use of criminal profiling. In addition,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better understand the efficacy of criminal profiling. Several implications from the findings are also presented.

❖ Keyword: criminal profiling, offender profiling, investigative psychology, psychological profiling, crime investigative analysis, personality profiling

투고일: 8월 6일 / 심사일: 9월 21일 / 게재확정일: 9월 21일
--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and Criminology, Metropolitan State University of Denver

** Research Associate, the Research Support Center at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